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현장 특성상 건설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작업 시간 중에는 현실적으로 덮개 설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어 건설폐기물의 보관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 자가 해당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한하여 덮개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붙일 수 있는 허가조건에 허용보관량을 준수하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조건과 관계없이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어 동일한 위반내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것”을 “것(「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 자가 해당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방치폐기물”을 “방치폐기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 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과 같다.	①-----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 관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 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 개 등을 설치할 것	4. ----- ----- ----- ----- <u>것(「대기환경 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 자가 해 당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 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조건)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제1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조건) ----- -----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생략) 2. <u>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방치 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 요한 조치사항</u> 3. (생략)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방치폐기물</u> ----- ----- ----- 3.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연 락 처	(044) 201 - 7363